영화 및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에 있어서의 주요법률 이슈(개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21년 9월 30일 | 민인기 변호사

Email : ingi.min@bkl.co.kr | T. 02-3404-0666

CONTENTS

Privileged & Confidential

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업무 소개 및 관련 주요 이슈

II. 영화 분야 업무 소개 및 관련 주요 이슈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1.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업무 소개 및 관련 주요 이슈

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업무 소개

bkl

연예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 수행 시 수많은 계약이 체결됨

예시

- 연예인, 아티스트와의 계약
- 광고주, 제휴사 등과의 계약

- ✓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
- ✓ 국내외 공연, 광고모델, 기타 연예활동 관련 계약
- ✓ 업무제휴 내지 대행계약 / 연예인 초상권 등 라이선스 계약
- ✓ 합작회사·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법인 설립 계약
- ✓ 공연, 뮤지컬 등 투자 계약

Privileged & Confidential

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업무 소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저작권 / 상표권 /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계약서 검토 및 관련 자문 -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 매니지먼트 계약, 광고모델계약 등
- ✓ 음악 저작물의 표절 여부, 실연 허용 범위 등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대응
- ✓ 연예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상표권 출원, 등록 등 브랜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대응
- ✓ 연예인 초상권 침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분쟁 발생 시 대응
- ✓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등 관련 법률 검토, 대응
- ✓ 적절한 라이센싱 및 머천다이징(상품화) 전략의 수립을 통한 수익증대 도모 방안 자문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전속계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의미함, 이하 동일) 관련 분쟁

- 가수 등 연예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의 매니지먼트 하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주로 회사 보다는 연예인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촉발되는 경우가 많음
- 관련 분쟁 태양을 살펴보면, 종래에는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속계약의 효력 유무보다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됨
- 전속계약 내용 중 주로 문제되는 부분
  - ✓ 무효 여부 관련 - 계약기간, 수익분배 비율, 연예인의 자유로운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위약벌이 과도한지 여부
  - ✓ 해지 여부 관련 – 기획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특히 정산 의무의 이행 내지 매니지먼트 업무의 제3자 위탁 시 연예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 발표하였고, 이후 2014년에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18년에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음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 (고용/도급/위임 등)

- 고용계약 – 연예인들이 일정기간 매니지먼트사에 전속하는 점, 매니지먼트사의 스케줄 관리를 받는 점, 매니지먼트사의 지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야 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없는 점, 보수가 연예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급 지급 의무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도급계약 – 구체적인 계약 내용 상, 무형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위임계약 – 매니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 처리 서비스를 하는 것이므로 위임 내지 위임 유사 계약이라는 견해.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689조에 따른 임의해지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음.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 (고용 / 도급 / 위임 등)

- 전속계약은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전휴재,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가처분, 민사판례연구[32], 1141-1142면 등)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연예활동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짐(장재옥, "전속계약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7집 제4호(2005. 12), 202면). 이 경우 수임인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연예인의 연예 활동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형 매니지먼트사가 자금을 투자하여 발굴 육성하는 신인 연예인과 사이에 체결되는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있어서는, 투하된 노력과 자본의 회수를 목적으로 연예인의 의무가 강화되고 매니지먼트사의 연예인에 대한 배타적 지배, 즉 전속성이 강화된 형태로 나타남을 이유로, 고용의 성격이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조성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연예인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05년), 이외에도 개별적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의 성격까지 혼재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손경한 편, 엔터테인먼트법(상), 진원사(2008), 260면}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 (고용/도급/위임 등)

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자 2004라143 결정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협상, 광고료 책정, 공연 일정 조정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연예업무의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계약상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하여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 (고용/도급/위임 등) - 임의해지 가능 여부

▪ 민법 제689조 -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결정

✓"... (중략)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대전 엑@포 과×공원의 자산을 소유・관리하는 재단과 그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위 공원을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재단 측의 공익적 목적과 함께 운영업체 측의 수익성 확보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위임인이든 수임인이든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민법 제680조 소정의 위임계약과는 달리 당사자가 약정한 해지사유가 인정되거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6261 판결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 특히 매니지먼트 및 수입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이해관계도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위임계약과 달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계약기간의 적정성

- 표준전속계약서 및 관련 하급심 판결의 입장
  - ✓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중심, 이하 동일함) :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을은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갑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계약서 제3조 제2항).
  - ✓ 하급심 판결 :
    데뷔일로부터 7년 의 계약기간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6261 판결 참조).

위약벌

- 표준전속계약의 경우 :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하고 있음.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 표준전속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약벌 규정을 둔 경우, 대부분 해당 조항의 유효성이 긍정되는 것으로 생각됨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6261 판결]

bkl

판례의 입장

▪ 주위적 주장 (민법 제103조 위반–계약 무효)

① **전속계약 체결 과정의 불공정성 여부** –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아버지가 입회한 가운데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② **계약기간 관련** – 총 계약기간이 12년(연습생 기간 2년 + 기본 계약기간 7년 + 해외 활동을 위해 연장된 계약기간 3년)으로서 다소 장기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함.

i) 그러나 연예기획사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연예인과 사이에 일정한 전속기간을 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음.

ii)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가 신인가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계약기간도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계약기간이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을 용이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음.

iii) 원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데뷔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그러나 원고가 데뷔를 하지 못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교육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어떠한 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두고 원고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iv)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계약기간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지 않음.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6261 판결]

bkl

판례의 입장

▪ 주위적 주장 (민법 제103조 위반–계약 무효)

③ 위약벌 관련

i)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성이 인정됨.

ii)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연예인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위약벌 규정과 동일함.

iii) 이 사건 전속계약상 위약벌은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잔여 계약기간이 줄어들수록 위약벌의 금액도 줄어들게 됨.

iv) 원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만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 볼 수 없음.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6261 판결]

bkl

판례의 입장

▪ 예비적 주장 (민법 제689조 제1항 혹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① **민법 제689조 제1항 적용 관련 –**

이 사건 전속계약은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는 하나,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위임 유사의 무명 계약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전속계약은 존속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해관계도 결부되어 있으므로, 위임계약과 달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② **신뢰관계 파탄 여부 관련 –**

ⅰ)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는 함.

ⅱ)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활동을 통제하거나 원고의 의견이나 건강상태 등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운영하여 왔다거나, 원고를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멤버들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왔다고 볼 근 거가 없음.

ⅲ) 피고는 정산 시에도 원고의 확인을 거쳐 원고에 대한 귀속분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상 정산 횟수와 달리 정산한 것은 당시는 해 당 그룹의 활동 초기로서 분배할 수익이 많지 않았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음.

➔ **계약 해지 역시 인정될 수 없음.**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전속계약 효력정지 관련 분쟁

▪ 근래 경향을 살펴보면, 연예인(아티스트) 입장에서 전속계약의 자체의 효력을 문제삼기 보다는 전속계약에 명시된 계약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해당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구하고, 본안에서 계약해지를 다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됨

→ 근래에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을 기초로 해서 전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라 전속계약 자체의 효력 여부에 대해 문제삼는 경우는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서울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9라21296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사실관계 :

(1) 매니지먼트사가 중국 회사와 사이에 아티스트의 중국 내 매니지먼트 활동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게 중국 내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

(2) 매니지먼트 사가 아티스트와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을 보면, 매니지먼트 사가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아티스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다만, 위와 같은 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니지먼트사가 아티스트의 명식적인 동의를 얻은 사실은 없었음.

(3) 이에 아티스트가 매니지먼트 사를 상대로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매니지먼트사가 중국 회사에게 중국 내에서의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리 및 계약 상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함.

해당 아티스트는 이러한 계약 위반은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러한 해지통보에 따라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 사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임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Privileged & Confidential

전속계약 효력정지 관련 분쟁

- 서울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9라21296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

법원의 판단 :

(1) 매니지먼트 대행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실질이 중국 지역에 한해서는 매니지먼트 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2) 매니지먼트 의무는 누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나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채권자의 연예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속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음

(3) 이러한 대행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아티스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후, 매니지먼트 사가 아티스트와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아티스트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음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전속계약 효력정지 관련 분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카합20479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사실관계 :

(1) 매니지먼트 사가 제3의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함. 해당 공동사업계약은 매니지먼트사가 보유한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독점권,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 등을 해당 제3의 회사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음.

(2) 아티스트가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아티스트의 동의없이 전속계약 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 당사자간 신뢰훼손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 그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임

법원의 판단 :

계약명칭을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하고, 그 내용 중 양도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을 양도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속계약 상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해당 공동사업계약 상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권에 대한 독점권이나 기타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보유한 매니지먼트 권한 중 대부분을 해당 제3의 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림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Privileged & Confidential

전속계약 효력정지 관련 분쟁

▪ 매니지먼트 권한을 특정지역에서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혹은 매니지먼트 사가 자신이 보유한 매니지먼트 권한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위 두 사건 모두 전속계약 상 전속계약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지위 또는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존재하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의 매니지먼트 업무 혹은 일부 분야에 있어서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이 단순히 대행 혹은 위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권리나 지위의 양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기간 만료 후의 초상권 등 사용과 관련하여

▪ **전속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동안 작성된 각종 콘텐츠의 활용 및 아티스트의 초상 등 사용과 관련한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여 각 배포한 현행 표준전속계약 상 아티스트의 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그 이용권한은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관련 규정이 정리되어 있음 (각 표준계약서 제8조 및 9조 참조)

-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소속사가 기획, 개발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바(각 표준계약서 제10조 참조), 이들 각 조항의 관계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관련 법률 이슈]

bkl

기간 만료 후의 초상권 등 사용과 관련하여

▪ **전속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동안 작성된 각종 콘텐츠의 활용 및 아티스트의 초상 등 사용과 관련한 논의**

- 참고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종래 판례는 견해가 엇갈리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해당 권리를 부정하는 견해가 우세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7296 판결 등 참조).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23조 제1문에 따라 물권과 채권은 민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 등에 의하여 각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1465 판결 참조). 그런데 원래 판례법(common law)에 그 연원을 가지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우리나라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을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권리의 성립 요건, 양도성 및 상속성, 보호대상 및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종래의 판례 입장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 또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및 문체부 표준전속계약서 비교]

bkl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2014년)	문체부 표준전속계약서 (2018년)
제8조 (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며,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상표권 등)**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하기 위해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가수'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을의 명예나 기타 을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기획업자'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가수'의 명예나 기타'가수'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콘텐츠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매출의 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기획업자'는'가수'에게 매출의 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가수'가'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기획업자'는'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가수'에게 제공한다.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기간 만료 후 권리 관계와 관련해서]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98조의2(보호받는 초상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상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3.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가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상응하게 보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8조의3(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의4(다른법률과의 관계)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8조의5(초상등재산권)
자신의 초상등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초상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8조의6(초상등재산권의 제한)
초상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4조의2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제35조의5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초상등"으로 본다.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전속계약 기간 만료 후 권리 관계와 관련해서]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98조의7(보호기간)

①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재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상등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초상등재산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98조의8(상속)

초상등재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이 초상등재산권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98조의9(초상등재산권의 양도·행사 등)

① 초상등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초상등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제98조의5에 따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초상등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도 해당 이용행위에 대한 초상등재산권자(제98조의8에 의한 승계인을 제외한다)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초상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98조의10(소멸)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소멸한다.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연예인 출연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확정]

bkl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1) 원고들은 2005. 3.경 연예기획사인 A사와 사이에 2006. 3.부터 2011. 2.까지 5년간 원고들이 방송, 공연 등에 출연하는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A사에게 위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전속계약을 각 체결하였음.

해당 전속계약에 따르면 A사는 원고들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계약서 제3조 제1항), 원고들과 관련된 방송 출연계약 등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계약서 제3조 제2항). 또한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A사가 수수한 후 원고들과의 협의 하에 사후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고(계약서 제7조 제2항), A사와 원고들이 2:8의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음(계약서 제7조제1항).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연예인 출연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확정]

bkl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2) 원고 1은 2010. 6. 3.부터 2010. 10. 7.까지 KBS의 '(프로그램 명칭 1 생략)'에 19회 출연하였고,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MBC의 '(프로그램 명칭 2 생략)'와 '(프로그램 명칭 3 생략)'에 출연하였으며, 2010. 7. 11.부터 2010. 9. 26.까지 SBS의 '(프로그램 명칭 4 생략)'에 출연하였음.

(3) 원고 2는 2010. 6. 2.부터 2010. 8. 18.까지 KBS의 '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 에 11회 출연하였고, 2010. 6. 1.부터 2010. 7. 31.까지 SBS의 '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 과 ' (프로그램 명칭7 생략) ' 에 출연하였음.

(4) 그런데 위 방송사의 출연료채권에 대해 A사로부터 출연료채권을 양도받은 회사, A사에 대해 국세 채권이 있는 대한민국 등이 법원으로부터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음.

(5) 원고들은 위 양도통지 및 압류결정 등이 각 방송사에 도달한 이후에 방송사를 상대로 하여, S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등을 알리면서 S사가 아닌 자신들에게 출연료채권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음.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연예인 출연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확정]

bkl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6) 이에 각 방송사는 2010. 12. 9. 부터 2011. 11. 15.까지 사이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 연예기획사, 채권양수인과 압류 및 추심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이 각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각 방송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 채권양도의 효력의 유무를 알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며, 각 출연료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공탁원인으로 해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미지급출연료를 공탁하였음

▶ 이 사건에서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음. 다만 A사와의 전속계약기간에 원고 1이 출연한 일부 프로그램에 관하여 과거에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연예인 출연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확정]

bkl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을 중심으로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 전속계약 내용들을 고려할 때 A사가 단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체결 내지 방송출연료의 수령 등을 대리할 수 있는 민법상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A사가 실제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들의 방송출연에 관한 계약교섭, 체결 및 출연료 수령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각 방송사도 원고들과 A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내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아닌 연예기획사 A사가 위 프로그램에 대한 이 사건 출연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II.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연예인 출연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확정]

bkl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A사와의 전속계약기간에 원고 1이 출연한 일부 프로그램에 관하여 과거에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하여 판시를 함)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이 사건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A사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 본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A사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것으로 볼 수 있다."

● 방송사와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분야업무 소개 및 관련 주요 이슈

I. 영화 분야 업무 소개

영화 제작, 배급 과정에서는 수많은 계약이 체결됨

- 시나리오 개발 계약
- 리메이크권 양도 계약
- 제작, 투자계약
- 배우 및 스태프 고용계약
- 배급계약
- 상품화권 계약 등

Privileged & Confidential

I. 영화 분야 업무 소개

영화 제작 및 배급 과정에서는 저작권 / 상표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영화 시나리오 및 감독계약 등 영화제작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자문 (권리 확보 및 저작권 침해이슈 관련 자문)
- ✓ 리메이크 권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저작권 보유 여부에 대한 실사, 검토와 Chain of Title issue 검토
- ✓ 영화 제작 및 투자계약 작성 및 관련 자문
- ✓ 영화 캐릭터 등을 이용한 라이센싱 및 머천다이징(상품화) 과정에서의 계약 검토 기타 상표권 분쟁 등 관련 자문
- ✓ 영화 개봉 이후 수익분배 및 제3자들의 권리 침해 주장 관련 분쟁발생 시 자문, 검토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영화 제작 단계 유의할 사항]

bkl

영화 제작 과정에서는 원작을 둘러싼 다툼 및 명예훼손 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Privileged & Confidential

● 시나리오 관련 분쟁

영화와 유사한 내용의 원작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원작자의 동의 없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됨

▶ 의거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음

-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에 있어 유의할 점

법원은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임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참조)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영화 제작 단계 유의할 사항]

bkl

영화 제작 과정에서는 원작을 둘러싼 다툼 및 명예훼손 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Privileged & Confidential

● **시나리오 관련 분쟁**

[까레이스키 사건]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연해주 이민 한인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그린 소설 '텐산산맥'과 드라마'까레이스키' 사이에 '까레이스키'의 제작 시점에 그 연출가가 '텐산산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의거관계는 추정되나 '까레이스키'는 '텐산산맥'과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작품으로 실질적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의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창작적 표현을 기초로 대비를 하여 보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침해를 부정하였음

이후 이른바 "귀신이 산다" 사건 등에 있어서도 의거관계가 추정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침해여부가 문제된 소설과 영화 사이의 성격과 유형, 이야기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사건의 전개 등이 서로 상이함을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05. 2. 15 자 2004라362 결정 등 참조)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영화 제작 단계 유의할 사항]

bkl

영화 제작 과정에서는 원작을 둘러싼 다툼 및 명예훼손 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Privileged & Confidential

● **명예훼손 등 이슈**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는 상업영화의 경우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대법원 2019. 3. 6 자 2018마6721 결정 등 참조)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 또한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원저작물의 리메이크 등 관련 이슈]

bkl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작성된 저작물의 종류

- 리메이크 :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줄거리, 각본 등은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속편 : 작품의 주요 인물과 상황, 줄거리 등을 그대로 옮겨와 전 작품에 이어서 만드는 뒷이야기
- 번외편(스핀오프) : 이전에 발표되었던 드라마, 영화, 책 등의 등장인물이나 상황에 기초하여 새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
- 전편(프리퀄) : 예전에 개봉된 영화와 스토리가 앞서는 영화. 보통 오리지널 필름과의 관계에서 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기능을 함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원저작물의 리메이크 등 관련 이슈]

bkl

리메이크 등 관련 분쟁 사례

- 속편 제작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문제 삼은 사례
  (두사부일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저작권을 둘러싼 제작사와 원작자의 분쟁
- 원작자는 제작사에게 리메이크권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드라마와 온라인게임 판권을 부여, 제작사는 출판물을 제외한 부가판권 권리를 모두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작자에게 드라마와 온라인게임 판권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

대응 방안

-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 내지 이용허락 받아야 함
- 리메이크, 전편(프리퀄), 속편, 번외편(스핀오프), 다른 매체로의 제작 등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다양한 저작물 중 무엇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지 계약서 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원저작물의 리메이크 등 관련 이슈]

bkl

Chain Of Title

● **개념**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현재 최종적인 적법, 유효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와 같은 권리(저작권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

리메이크나 속편, 기타 프리퀄 등의 권리를 구매하려는 제작사 또는 배급사에게 chain of title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을 허락할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됨

무권리자로부터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고, 향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자는 취지 이고 이는 pre-production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임

● **리메이크 주요 사례**

영화 설국열차 → 넷플릭스 드라마 설국열차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 여름과 가을> →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원저작물의 리메이크 등 관련 이슈]

bkl

리메이크 등 작성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범위– Chain of title issue

- 현재 실무 상으로는 영화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의 동의를 받고 있음
- 그 외 연출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도 창작적 기여를 하였다면 저작권자에 해당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이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임
- 원작과 별도의 음악/미술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원작의 음악/미술 저작권자에게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임

동의서/확인서 예시 문구

- 본인은 본 영화의 시나리오 및 본 영화나 본 영화의 리메이크 작업, 완성된 리메이크 작품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리메이크 작업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주장 및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 및 확약합니다.
- 본인은 본 영화에 대한 리메이크 작업 진행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주장 및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 및 확약합니다.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원저작물의 리메이크 등 관련 이슈]

bkl

Chain of Title issue 확인 시 검토 서류 (예시)

- ✓ 감독계약서
- ✓ 투자 및 제작계약서, 공동제작계약서
- ✓ 작가계약서(시놉시스 작업, 각본, 각색 등 어떠한 형태로라도 참여한 작가의 경우 모두 해당)
- ✓ 프로듀서 계약
- ✓ 만화 등 다른 저작물에 기초하는 경우 원저작자와의 판권계약
- ✓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음악감독과의 계약
- ✓ 출연배우와의 계약
- ✓ 유통 및 배급계약
- ✓ 저작권 등록 여부 확인
- ✓ 저작권 양도 계약서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 최초의 저작권자로부터 현재의 저작권자까지 단절됨이 없이 권리가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영화 투자/제작 및 배급 계약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정리]

bkl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

- 기본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투자표준계약서 (이하 "본건 표준계약"이라 함) 참조 요망

① 투자지분율 : 총제작비에서 각 투자자의 투자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② 수익지분율 : 투자지분율 x 0.6

- 양 개념이 필요한 이유 → 투자지분율은 투자원금 회수시 혹은 총제작비를 예정보다 적게 지출하여 투자금이 남았을 경우에 있어 투자자들 사이의 배분 기준이 됨 / 반면 수익지분율은 순이익 (=총수익-총비용)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이 됨

수익의 배분 관련 사항 결정시 유의사항

- 배분기준이 되는 총수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본건 표준계약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해 제작한 영화의 배급(국내/외 상영 및 부가판권 매출 등)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영화의 속편이나 기타 뮤지컬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수익배분의 대상이 되는 매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

(=본건 표준계약 3조 3항 가목 참조. …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위와 같이 규정하게 되는 경우, 영화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자가 수익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을 이용하여 올리는 모든 수익을 향유하게 될 것임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영화 투자/제작 및 배급 계약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정리]

bkl

제작비 집행 및 예산 관련 이슈

-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작비 등을 집행하게 됨 : 이를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횡령이슈가 문제될 것임
-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투자사의 허락 없이 제작사가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총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자신의 지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임

수익의 배분 및 정산

* 정산 시 공제순서 (표준계약서와 일부 상이함)

- (1) 지방배급사 수수료 공제
- (2) 배급수수료 공제
- (3) 관리수수료 공제
- (4) 부가판권 판매비
- (5) 부가판권 판매 수수료
- (6) 해외수출비
- (7) 해외수출대행 수수료
- (8) 기타비용 공제
- (9) 순제작비예비비 공제 (발생시)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영화 투자/제작 및 배급 계약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정리]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수익의 배분 및 정산

(10) P&A예비비 공제 (발생시)

(11) P&A 초과분 공제 (발생시)

(12) 순제작비 초과분 공제 (발생시)

(13) 주연배우 인센티브 (발생시)

(14) 투자 원금 회수

→ 투자원금 회수까지 완료될 때 총비용이 회수된 것으로 보게 됨 / 투자원금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지분율에 따라 반환을 하게되고, 이후 순이익 발생 시 수익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게 됨

* 수익배분 관련 기본 원칙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갑을 포함한 투자자는 순이익의 60%(이하 '수익분배금')를, 제작사인 을은 순이익의 40%(이하'성공수당금')를 분배받기로 한다. 을이 투자자로서 '본건 영화'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수익분배금 중에서 을의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분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bkl

영상제작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제작을 기획한 영화사, 방송사, 비디오제작사 등

영상제작자의 권리

✓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 영상제작자라는 사실만으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전체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

방송사가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고 방송사 소속 PD가 감독을 맡는 경우:

✓ 방송사는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였으므로 영상제작자임

✓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방송사는 저작권자에도 해당함

영화사가 영화를 기획, 제작하고 외부 인원이 감독을 맡는 경우:

✓ 영화사는 영화를 기획, 제작하였으므로 영상제작자임

✓ 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감독 등 근대적 저작권자가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 인정될 것임

2개 회사가 공동제작 형태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 양사 모두가 영화 기획에 참여하였다면 공동 영상제작자에 해당할 수 있음

✓ 양사가 영상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 101조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

✓ 이 외에도 양사가 감독, 연출, 촬영 담당자 등으로부터 계약을 기초로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면, 공동저작물의 규정 (저작권법 제48조)이 적용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참조)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공동저작물 관련 이슈]

bkl

저작재산권의 후발적 공동보유

● 공동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계약 등으로 인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후발적으로 공동보유하는 경우 (두사부일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1. 사실관계

(1) A와 B의 영화제작계약 체결 (2001. 7. 1.)

A와 B는 "두사부일체"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2001. 7. 1.경 A는 영화의 제작을 담당하고 B는 일정 금액의 투자, 비용의 집행, 투자의 유치, 판권 거래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영화제작계약")을 체결함.

(2) B와 C의 투자계약 체결 (2001. 8. 10.)

B는 A와 이 사건 영화제작계약 체결 후인 2001. 8. 10. 경 투자사인 C로부터 위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별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별도 투자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별도 투자계약에서 정한 수익금 분배비율에 따라 B와 C가 공동소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하여 A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음.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공동저작물 관련 이슈]

bkl

저작재산권의 후발적 공동보유

● 공동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계약 등으로 인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후발적으로 공동보유하는 경우

(두사부일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3) A의 이 사건 영화 제작

A는 2001. 8.경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영화의 감독, 연출, 촬영, 편집을 담당하는 자들, 배우, 기타 스태프와 영화제작협력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였음

(4) A가 D에게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 양도 (2004. 10. 15. 경)

D는 2004. 10.경 B의 동의 하에 A로부터 이 사건 영화 관련 저작재산권 및 제작사가 갖는 모든 권리를 승계함.

(5) D의 속편 제작 및 C의 D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주장

D는 2005. 5. 경부터 이 사건 영화의 속편제작에 착수하여 2006년 경 해당 영화를 국내에서 상영하였음. 이에 C가 B로부터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영화의 2차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수하였는데, D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영화의 속편을 제작하여 상영한 행위는 자신이 보유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공동저작물 관련 이슈]

bkl

Privileged & Confidential

저작재산권의 후발적 공동보유

관련 법률규정

구저작권법	현행저작권법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1.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41조 ② 제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45조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제45조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48조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구 저작권법(2003. 5. 27.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5조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2003. 5. 27.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로 개정되었으며,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도 이와 같음)
제76조 영상제작자는 영사제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01조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부칙<제6881호, 2003. 5.27.> ④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공동저작물 관련 이슈]

bkl

저작재산권의 후발적 공동보유

● 공동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계약 등으로 인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후발적으로 공동보유하는 경우 (두사부일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 **영화의 저작자?** 원시적으로는 영화감독과 같은 근대적 저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할 것임

해당 판결은 A와 B가 공동의 영상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후적으로 법률 및 계약 상 규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근대적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공동보유하게 된 것으로 판단함

✓ **저작권의 행사?**

이와 같이 후발적으로 저작권을 공동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상 공동저작물의 재산권 행사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판시함

✓ **C주장의 타당성?**

C가 B로부터 저작권을 일부 양도받을 당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공동저작재산권자인 A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C에 대한 (B가 보유한)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는 무효임. 따라서 C의 D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이 사건과 같이 저작재산권을 법률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양도받아 보유하는 경우 그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구 저작권법 제45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는 저작권의 특성, 공동보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관계, 저작재산권을 공동보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재산권을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공동보유하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공동보유자 상호간에 저작물의 행사 등에 관하여 협의할 만한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재산권의 공동보유자 사이에 저작재산권 행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구 저작권법 제45조(현 저작권법 제48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Privileged & Confidential

II. 영화 산업 분야 관련 법률 이슈

[공동저작물 관련 이슈]

bkl

대응방안

◆ **저작재산권을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공동보유하게 되는 경우**

✓ 공동저작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2) 단독저작물의 저작권이 공동소유로 된 경우를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고, 계약에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면 인적 결합관계에 따라 민법상 공유규정 또는 합유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판례는 특약에 의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특약이 없다면)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응 후발적으로 공동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의 재산권 행사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

✓ **저작권을 공동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각 저작권자의 권리 처분이나 행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Privileged & Confidential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21년 9월 30일 | 민인기 변호사